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3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김기표 · 김승원 · 이연희
김남희 · 한민수 · 권철승
박지원 · 신영대 · 박수현
맹성규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의 관련한 차별·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자원 조달이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신설).
- 나.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사회통합정책의 집행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21조 신설).
- 다. 법무부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2조 신설).
- 라.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안 제23조 신설).
- 마.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안 제2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며, 제22조의2를 제28조의2로 한다.

제5장(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제20조(기금의 설치)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출입국관리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 다만, 재외공관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수료
4. 「국적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

된 수수료

5.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6. 기금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④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의 집행

2. 제9조에 따른 정책연구·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업무수행 지원

3. 제2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4. 제28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통합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2조(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이민자 기

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② 기금운용심의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24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u> <u>제20조(기금의 설치) ① 법무부장</u> <u>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u> <u>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u> <u>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u> <u>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u>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u> <u>으로 조성한다.</u> <u>1.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u> <u>2. 「출입국관리법」 제87조에</u> <u>따른 수수료. 다만, 재외공관</u> <u>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제외한</u> <u>다.</u> <u>3.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u> <u>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u> <u>에 따른 수수료</u> <u>4. 「국적법」에 따른 허가신</u> <u>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u> <u>급과 관련된 수수료</u> <u>5.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u> <u>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그</u> <u>밖의 재산</u>

<신 설>

6. 기금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④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의 집행

2. 제9조에 따른 정책연구·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업무수행 지원

3. 제2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4. 제28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신 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통합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7. 그 밖에 사회통합을 실현하
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나 활동

제22조(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
금 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
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
부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
금 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
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중 주
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
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제
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보칙

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
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② 기금운용심의회가 제1항제2
호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③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
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을 임명한다.

제24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
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u>제20조</u>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생략)	<u>제26조</u>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현행 제20조와 같음)
<u>제21조</u> (민간과의 협력) (생략)	<u>제27조</u> (민간과의 협력) (현행 제21조와 같음)
<u>제22조</u> (국제교류의 활성화) (생략)	<u>제28조</u> (국제교류의 활성화) (현행 제22조와 같음)
<u>제22조의2</u> (이민정책연구원) (생략)	<u>제28조의2</u> (이민정책연구원) (현행 제22조의2와 같음)
<u>제23조</u> (정책의 공표 및 전달) (생략)	<u>제29조</u> (정책의 공표 및 전달) (현행 제23조와 같음)